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40865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09-12	담당자 이메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07	babo3352@naver.com

바보형제쭈꾸미 정 보 공 개 서

(주)바보형제스토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바보형제스토리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사업본부 소재지 및 연락처]							
주 소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가맹본부 대표전화 및 가맹사업부전화		055-299-3352	팩스번호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l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바보형제쭈꾸미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주)바보형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I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제스토리	2014.03.07.	2014. 03. 07.	권태성 055-299-3352		_		
	법인등록번호 1942	번호 194211-0223785		번호	609-8	36-1796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With a statement of the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대표이사	권태성	바보형제쭈꾸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성	055-299-3352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KOREA FAIR TRA	^M 경상남도 창	원시 의창구 북민	년 무동로 27		
사내이사	안형준	바보형제쭈꾸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성	055-299-3352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그] 무]] 太].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사내이사	권태삼	바보형제쭈꾸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성	055-299-3352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그) 무)] 그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사내이사	권태정	바보형제쭈꾸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성	055-299-3352	_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그 미 중		경상남도 창	원시 의창구 북민	면 무동로 27		
감사	권태희	바보형제쭈꾸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성	055-299-3352	_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바보형제쭈꾸미	
상 호	바보형제쭈꾸미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을 사용하여 가맹
(경 보	마모용제구기 이 00점	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바보형제쭈꾸미	출원 준비 중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바보형제	등록 번호 : 4102390550000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826,476	233,259	3,593,216	3,152,032	-52,486	-20,528
2022년	3,789,426	289,050	3,500,376	3,266,773	-124,202	-92,839
2023년	3,572,150	554,029	3,018,120	3,150,028	-514,309	-482,256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어구		2 471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권태성	대표이사	2014.03.07 ~ 현재	대표이사	회사 총괄 업무			
가맹사업	안형준	사내이사	2014.03.07 ~ 현재	이사	영업관리업무			
관련임원	권태삼	사내이사	2014.03.07 ~ 현재	이사	재무 담당			
	권태정	사내이사	2014.03.07 ~ 현재	이사	기획 및 인사			
	권태희	감사	2014.03.07~ 현재	감사	회계 및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_	-	-	-	_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T	임원=	수(명)	TIQLA (PH)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3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바보형제 (상표권)	가맹점상호로 사용	등록(2012.08.31)	등록번호 4102390550000	권태성	2022.8.31. (2022.8.31)

- ※ 당사의 서비스표는 현재 출원 준비 중에 있으므로 등록되기 전까지 당사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4년 3월 17일
- 2. [바보형제쭈꾸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바보형	바보형제	권태성	2014. 03. 07.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스토리	쭈꾸미	그대경	현재	북면 무동로 27

3. [바보형제쭈꾸미]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바보형제쭈꾸미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쭈꾸미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바보형제쭈꾸미]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	1.	2	2022.12.31.			2023.12.31.		
N =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8	28		28	28	_	24	24	-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2	2	_	2	2	_	2	2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3	3	_	3	3	_	2	2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1	1	_	1	1	_	1	1	_	
충북	1	1	_	1	1		1	1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5	5	_	5	5	_	4	4	_	
경남	16	16	_	16	16	_	14	14	_	
제주	-		_		_	_		_	_	

별첨 2) 가맹점 목록

5. 최근 3년간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	9	1	0	0	28
2022	28	0	0	0	0	28
2023	28	0	4	0	0	24

6. [바보형제쭈꾸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외에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단귀·선전,ㅜ/෦세 미글								
	2023년	2	2023년 가명		의 연간 평			
지역	지연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안 백(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매출액	3.3m²당	상한	3.3m²당	하한	3.3m²당	
전체	24	303,455	4,361	411,836	7,062	83,536	1,057	산출가맹점수:1 24
서울	-	해당없음						
인천	2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5개미만
대구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2	해당없음						5개미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1	해당없음						5개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개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4	해당없음						
경남	14	307,710	4,255	411,836	7,062	83,536	1,057	
제주	_	해당없음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이상 운영한 24개 가맹점별 물품공급가의 5배를 각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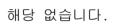
[바보형제쭈꾸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4	2,15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가맹금 예치부	경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83	055-320-900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절차
	미지자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 방문 →
	매 장 직 접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 예
 우체국 계좌가	이 보기	치증서를 교부받아 보관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 접
있는 사업자	인 터 넷 뱅	속 → ③ (금융과 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 예치제)클릭
	킹 이용시	ightarrow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ightarrow$ ⑥ 가
		맹금 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우체국 계좌가 🛭	었는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에 위의 절차대로 진행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A내역 EDIATION AGENCY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대신 [우체국]의 예치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 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인국 하 3 기타 소 3 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1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교육비	1,100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시작1일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_	_	_	_	_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해당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มอ
총계	[10,000]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10,0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 여야 하는 채무액 또 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1.계약종료 시 잔존채 무액을 공제한 후 상 호,서비스표등 당 가맹 사업과 관련된 영업표 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합계	[22,100]
가맹비	11,000
교육비	1,100
보증금	10,000
개점행사비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맛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35,850]	2,717			165㎡ 기준
간판	가맹본부	4,400	88	공사시작전 50%, 공사완공 10일전		7m기준, 1m당 500추가
인테리어	가맹본부	82,500	1,650	30% ,완공시 20%	공사/공급	
주방기기	가맹본부	22,000	440	추후별도계약	전 계약	
주방집기	가맹본부	22,000	440	추후별도계약	취소	
초도물품	가맹본부	2,200	44	추후별도계약		
POS시스 템	가맹본부	2,750	55	추후별도계약		

- ※ 전기증설,냉난방기,철거,소방공사,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계약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등을 자체시공할 경우에는 감리비로 당사에 3.3㎡당 일금삼십삼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거리 조정원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광고 시 분담액 결정	자세한 내 V-9을 참고 바랍니[하시기	광고 집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상표사용료)		해당 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않음	교육필요시 실비범위내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置り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不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 용	V에 본부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RADE MEDIA	FION AG	ENCY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_1 = _1 *1 *1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출원신청 후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 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혐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바보형제쭈꾸미]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동의를 받은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해 모든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교육비로 <u>일금백십만원(\(\frac{\psi}{\psi}\)1,100,000)정<부가세 포함>과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u>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 니다.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이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일십일만원(₩110,000)정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바보형제쭈꾸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근로정거래주정위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바보형제쭈꾸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왼쪽에 기재된	1차 위반 : 구두경고	
│ │ 쭈꾸미,피자,도토리묵 등	제품 외에 다른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상품 및 용역을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제공할 수 없음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지역특성 및 상권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 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 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차 위반 : 구두경고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결정에 대해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NAGENCY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쭈꾸미세트	9,900		
쭈꾸미 볶음	7,000	공문발송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쭈꾸미해물샐러드	5,000	및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도토리전	5,000	전화통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묵사발	5,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함께	가맹본부	계열회사	
쭈꾸미,피자,도토리묵 등을	비비청ᆌᄍᄁ미	케다 어ㅇ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바보형제쭈꾸미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협의하여 정함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 3 시 1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바보형제쭈꾸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II am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	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 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 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거리 조정원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 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E	관련 계약2	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2항	1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영업방침을	35조 2항	2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자격・면허・ 3	85조 2항	3가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조공법 또는 3	85조 2항	3나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은 경우	점을 지키지 않	85조 2항	3다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C 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5조 2항	3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ALLEST STATE OF THE STATE OF	
계약 해지 사유 기계	관련 계약조문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한 경우 (아래 참조)	32조 1항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즉시해지 사유 발생시 (아래 참조)	32조 2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 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 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에게 물품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 2. 귀하가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당사의 가맹사업 운영 시스템과 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 3.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등을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 4. 귀하의 신용상태의 악화로 물품대금이 연체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5. 귀하가 임의로 당사와의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6.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 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9. 귀하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1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 <mark>으로 양도 신청 → 당사</mark>	
수할 것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	교육비 부담
2.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	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	파보이 누리
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	점운영권 이전 완료	
제가 없을 것	<u> </u>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양수인은 가맹비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로 <u>일금백십만원(₩1,100,000)정<부가세 포함>과 보증금</u>을 당사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	
대리행사	발생시 협의			
업무위탁	발생시 협의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바보형제쭈꾸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쭈꾸미, 피자, 도토리		
묵 등을 판매하는 업		
- 동종사업으로 가맹본부를 경영하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	
는 업	하지 않습니다.	
-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사업		
의 가맹점을 경영하는 업	Th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0:00~오후 10:00	연중 무휴	설 및 추석 연휴 제외

-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연속하여 4일이상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 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영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외관청결상태 (외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외관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내부청결상태 (내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내부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서비스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화장실청결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화장실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율 분담 절차 비급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1/N(N:가맹 점 수)	과그 계회 고그 → 가매저이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1/N(N:가맹 점 수)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평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		
개별 행사	행시	나에 따라 딜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해당없음				

- 주)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두가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① 사전 약정 당사 및 귀하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 합니다.
- ② 사전 동의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주) 위 1항 및 2항의 절차를 거친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 계획, 주관하여 당사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당사에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상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합니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인터넷 상담 문의 - 당사 방문 문의	D-45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사업의지 파악 - 전반적인 창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IV.가맹점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 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4일 전	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가맹 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중의 부담 금전지급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점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상이함	방법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A공사일정A확인/EDIATION AGEN	CY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5~6(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	ㅇ간판교체 비	O점포의 확장 또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점포환경개	
비,인테리어	용	는 이전을 수반	용 청구(공사계약	선일로부터 3	
등의노후화가	-인테리어 공 사	하지 않는 점포	서 등 공사비용을	년 이내에 가	
객관적으로 인정	비용(장 비,집 기	환경)천 : 20%	증빙할 수 있는 새류	맹본부의 책	
도는경우	의 교 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	첨부) → 90일 이내	임없는사유로	
o위생이나 안전	을 제외한 ^R 실	A 는 이전을 수반	에 기맹본부 부담액을	계약이 종료	
의 결함으로 인	내건축공사에	하는 점포환경	기맹점사업자에게 지	(계약의 해	
하여 기맹사업의	소요도는일체의	개선 : 40%	급	지 · 영업양도	
통일성을 유지	비용 단, 가맹		(단, 가맹본부와	<i>포</i> 함)되는 경	
하 기 어렵거나	사업의 통일성		가 맹 점 사 업 자 간	우 가맹본	
정상적인 영업	과 무 관 하 게		별도의 합의가 있는	부 부담액	
에 현저한 지	가맹점사업자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중 잔여기	
장을 주는 경	가 추가 공사를		서 분화급 기능)	간에 비례하	
우	실시함 에 따라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쇼요 되는 비용		맹본부 또는 가맹	시 (지하다	
	은 제외)		본부가 지정한 자	니하거나 이	
			를 통하여 점포환	미 지급한	
			경개선을 한 경우	경우에는 환	
			에는 점포환경개선	수 가능	
			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화대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	
첨뉘) → 3차에 걸	
쳐기 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7]일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55-299-3 352)
가맹점사업 자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55-299-3

요청 시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7]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352)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바보형제쭈꾸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시 교육	조리교육, 영업 노하우 등 개점 전에 필요한 교육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개업 전일까지	필수교육
보수 교육	개업시 교육 숙련도가 낮을 경우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특별 교육	새로운 메뉴 출시 등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바보형제쭈꾸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업시 교육	5일 내외	2,200	필수교육
보수 교육	추후 공지	협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협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 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는 개업 시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55-299-335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보공개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령확인서(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수령 및 비밀유지 확약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